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세제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of Inheritance Tax System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김재희* · 김길훈**
(Kim, Jae-Hee · Kim, Gil-Hoon)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V. 결론

I. 서론

최근 중소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고령화를 그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경제 고도성장기의 주역인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사회 일각의 부정적 인식과 과중한

* 김재희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조교수

상속증여세 부담문제,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의 부재와 가업승계전략 및 준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업승계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해 경영자가 고령화되면 회사발전이 정체되고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이어지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

가업승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과중한 조세부담이 지적되고 있다.¹⁾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상대적 비중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높은 상속증여세부담 등 과다한 가업승계 비용으로 인해 가업승계 후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가업 승계에 따른 조세부담이 많아 기업을 물려받은 차세대 경영자들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외의 자산을 처분하여 세금으로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보유 지분을 팔아 세금을 냈을 때에는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내부에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 소중한 무형자산이 소멸되고 일자리와 생산설비 등이 상실되어 국가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가업 승계의 원활화가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유지,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상속세제와 후계자 양성 등에 관한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독일은 가업승계를 제2의 창업 관점에서 중시하고, 가업승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과 제도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가업승계 관련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승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지원정책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EU 또한 보다 유리한 조세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및 2008년에 가업승계와 관련한 대폭적인 세계개편이 있었지만 아직도 가업승계 관련 지원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가업상속에 관한 현행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외국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과세제도와 비교 고찰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관련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2007년 6월 기업 활동경력 20년 이상이고 최고경영자 나이가 55세 이상인 중소기업 1871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업승계시 애로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과중한 조세부담'이 7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승계관련 상속과세제도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와 외국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과세당국이 향후 기업상속제도 관련 입법을 할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기업승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 기업승계관련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렸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기업승계의 개념과 유형²⁾

기업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승계는 통상적으로 기업승계 중 가족적 승계를 의미하며, 기업승계보다 기업승계가 더 좁은 개념이다. 다만 기업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인 경우 혈연 이외의 제3자에게 승계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양자를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

기업승계는 기업의 경영 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자녀 등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은 소유권과 경영권이 동시에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업승계란 소유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승계는 누가 승계를 받는가에 따라 가족적 승계, 전문경영자 승계, M&A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적 승계는 소유권이 가족 간에 승계되는 것으로 소유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전문경영자 승계는 전문경영자에게 경영을 승계하는 것이며 전문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승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M&A로 이어지므로, M&A도 기업승계의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기업승계의 유형은 승계의 법적수단과 형태에 따라서 상속, 증여, M&A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이루어

2) 배원기(2008)와 조병선·조봉현(2007)을 참고하여 정리함.

지는 가업승계의 유형이고,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경영권을 이양하는 형태이다. 이와 달리 M&A는 유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이양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속증여에 따른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2. 우리나라 상속과세제도

2.2.1. 상속·증여세 개요³⁾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즉, 자연인의 사망을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 하여 그 사망한 자연인의 유산이 상속·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유산과세형처럼 유산관리인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지 않고 각 상속인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면서 상속세액에 대하여 각 상속인 등이 상속분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유산과세형에 철저히 못하고 징세편의적인 관점에서 취득과세형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수증재산가액을 기초로 과세된다. 따라서 취득과세형에 해당하며, 이는 상속과세에 있어서 유산과세형을 취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등을 합산한 후,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증여의 경우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재차증여재산가액을 더한 후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구간별 법정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최종 결정하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과정은 매우 유사하다.

3) 임상엽·정정운(2008)과 신상철(2007)을 참조하여 정리함.

우리나라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97년 이후 단일화하여 현재 동일하다. 세율은 최저세율 10%에서 최고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은 본래의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포함)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급여 등의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즉 '재차증여가액'을 합하고,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및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여기에 기초공제, 배우자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나 일괄공제액 중의 하나,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 수수료공제 등의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주어지면 과세구간에 따라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이때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할증세액을 가산한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에 연부연납, 물납 등을 차감하여 고지세액을 산정한다.

2.2.2. 가업승계에 관한 상속·증여세의 규정⁴⁾

2.2.2.1. 가업상속공제 규정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007.12 세법개정시 기술·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위하여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종전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그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다만,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그 지원대상과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 세제지원 대상인 가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하는 등 요건을 다소 강화하였다. 또한, 가업을 상속받은 후 10년 안에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4) 이택스코리아 (www.etaxkorea.net)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해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설을 참조하여 정리함.

가업용 자산을 100분의 80(5년 이내에 100분의 90)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다.

2008.12 세법개정시에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종전의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했고, 가업상속공제율도 확대하여 종전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를 40%로 확대하였다. 또한 가업상속공제한도도 확대하여 종전의 30억원에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60억원 ~ 1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2.2.2.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인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 및 증여세 세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조특법 제30조의 6①).

2.3. 외국의 상속과세제도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의 승계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승계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영속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외국의 가업승계 관련 조세제도를 비교한 표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한국과 외국의 가업승계 관련 조세제도 개요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세율	10~50%	18~45%	7~50% (직계비속: 7~30%)	10~50%	40%	5~40%
공제 및 감면	가업상속공제 2억원 또는 상속재산의 40% (공제한도: 60억~100억원)	사업용자산: 130만 달러 까지 비과세	(기본공제 차감 후) 상속재산가 액의 35% 추가공제	-소규모사업용 토지: 80% 감면 -기타사업용 택지: 50% 감면	-비상장주식: 100%경감 - 상장회사 경영권 지분 : 50% 경감	사업용자산 : 75%경감
할증평가	경영권 있는 주식의 경우 할증평가 (중소기업은 2009년까지 유예)	비상장주식에 만 적용하고 국세청에서 할증규모결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분납	3년(2년)거치 후 12년(5년)간			20년간 분납		5년 또는 10년간 매 6개월에 1/20씩 분납
상속세 감면제도	없음	없음	매년 10%씩 상속세 감면	없음	없음	없음
비고		매년 상속공제를 확대,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0년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 통과	이중신탁 활용	비상장주식형 태의 중소기업 가업상속의 경우: 관련 상속세의 80% 납부이연		

2.4. 선행연구 검토

상속증여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속과세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상속세제의 개선방안 등의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 반면 가업승계 또는 경영권승계와 관련된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상속세율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송한수(2006)는 기업인들이 경영권을 상속하기 위하여 각종 편법을 동원하였으며 이는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 것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보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주요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은 상속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였으며, 상속과세정책에 대해 크게 회의론을 품고 그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투자유치 및 경영의욕 고취 등을 위해 상속세율을 현실에 맞게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중범(2006)은 현행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최고세율 50%에 할증률 10~30%까지 감안하면, 상속세를 내고는 제대로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동안 상속세 강화를 목적으로 최고세율을 계속 올려왔는데, 오히려 그에 따른 역효과가 난다는 것은 이미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하였다. 높아진 세율에 따른 세부담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행태 때문에 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며 이로 인하여 경제적 의욕이 저하되고 투자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2007)는 2007년 세계개편(안)에 대한 건의사항에서 실제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5년 동안 해당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이 혜택을 받은 후에도 10년 동안 지분율을 유지해야하며 종업원 수도 10%이상 감소하면 안된다는 요건은 지나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업영위기간은 중소기업의 평균사업영위기간이 10.6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10년 이하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보 DB에 등록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종업원 수가 최근 6년간 8.6%가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10%감소는 정상영업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후요건 역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성봉(2008)은 가업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특례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업상속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사업영위기간 등 가업상속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승필(2008)은 비교적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향으로 기업지속 시 감면제도의 요건 완화, 세액공제의

확대, 누진세율의 조정,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상속세납부를 위한 금융지원을 주장하였다. 중소기업이 기업승계요건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주주로서 상장기업은 40%이상, 비상장기업은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당부분이 가족 중심의 분할소유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식보유비중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제도와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2007)는 2007년 세계개편(안)에 대한 건의사항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성격으로 상속주식의 30%(지분을 50% 이하인 경우 20%)를 추가로 할증 부담하고 있는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제도라고 지적하고 할증과세폐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성봉(2008)은 기업 상속과 관련한 과세문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들의 기업 상속 과세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업 상속 관련 조세체계에 대한 국제비교의 결과 한국은 기업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경영권 승계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부담을 지우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권이 있는 주식 등을 상속할 때 할증과세로 인하여 한국은 경영권 이양 등 기업상속에서 불리한 입장이며 선진국의 경우 경영권이 있는 주식의 경우 계속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경영권 유지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할증과세의 도입 취지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었으나,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었고 이미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에서도 엄격히 규율하고 있으므로 할증과세의 유지근거는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관련 상속세제에서 우선적으로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황인학(2008)은 우리나라 기업 상속과세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율, 할증과세, 포괄주의과세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업 상속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세금 징수 규모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상속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조세 인프라를 확충한 후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할증과세 제도가 초래하는 각종 부작용을 감안해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없이 동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승계 성과에 따른 상속세 감면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신상철(2007)의 연구에서는 현

행 상속과세제도 현황 및 세수 규모 분석, 주요국의 상속과세제도 비교 분석, 상속을 앞둔 승계예비기업의 승계비용 추계 및 주요국과의 비교·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승계관련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상속관련 세제가 기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되어 승계관련 과중한 납세순응비용을 경감하고, 기업승계 비용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업용 자산의 상속에 대하여 할인평가 제도의 도입 및 상속증여세 개선 방안으로 기업승계 기업에 대한 상속세의 점진적 감면을 제안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상속과세제도 하에서는 기업의 정상적인 기업승계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상속세의 폐지와 자본이득세의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 기업상속에 대해 상속세의 대폭적인 경감혜택을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에 초점을 두고 기업승계와 관련한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에 중소기업 기업승계와 관련한 상속과세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상속세 세율구조

3.1.1. 문제점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재의 세율구조는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다.⁵⁾ 최고세율 50%는 지난 10여 년간 세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온 결과이다. 1996년까지 40% 이던 최고세율이 1997년부터 50%로 높아졌고, 2000년의 개정에서도 최고세율 적용 구간이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고세율이 상승한 효과가 있었다.

5)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은 26.3%이다(기획재정부, 2008년 세계개편(안) 문답자료, 2008.9.1).

<표 2> 상속증여세의 법정세율 구조 변화

1996.12.31 이전	1997.1.1~1999.12.31	2000.1.1 이후
- 상속세		
· 5,000만원 이하 10%	과세구간 및 세율 단일화	· 1억원 이하 10%
· 2억 5,000만원 이하 20%		· 5억원 이하 20%
· 3억 5,000만원 이하 30%		· 10억원 이하 30%
· 5억 5,000만원 초과 40%		· 50억원 이하 40%
		· 50억원 초과 50%
- 증여세		
· 2,000만원 이하 10%		· 30억원 이하 40%
· 1억 5,000만원 이하 20%		· 30억원 초과 50%
· 3억원 이하 30%		
· 3억원 초과 40%		

송한수(2006)의 연구에서도 기업들이 경영권 상속을 위하여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안종범(2006)과 황인학(2008)의 연구에서도 높은 상속세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본, 미국, 덴마크,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상속·증여세 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지 않고, 캐나다·호주와 같이 상속·증여세가 없고 소득세만 과세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동일하다. 그리고 독일, 터키, 벨기에, 아일랜드 및 네덜란드 등 국가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더 낮게 설정하고 있다. 즉, 다른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율의 상속세 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국제적 정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부담은 저축의 형성을 저해하여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표 3>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2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15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5개국)
· 영국 (40%) · 프랑스 (40%)	· 독일 (30%) · 터키 (30%) · 벨기에 (30%) · 아일랜드 (5%) · 네덜란드 (27%)등	· 한국 (50%) · 일본 (50%) · 미국 (45%) · 덴마크 (36.25%) · 스페인 (34%)

자료: 기획재정부, "2008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2008.9.1

3.1.2. 개선방안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현재의 50%에서 낮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명목적인 최고한계세율인 50%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반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한계세율은 오히려 인상하여 그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주식의 평가할 경우에 10%~30%의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계세율은 현재보다 더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의 세율은 일정한 수준까지 인하하여야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한계세율구조는 최소한 소득세의 최고수준인 35%로 낮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높은 누진세율에 의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탈세 또는 조세 회피를 하려고 하지만 세율을 일정부분 인하할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수 측면에서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3.2. 기업상속공제제도

3.2.1. 문제점

현행 기업상속공제액에 있어서 2억원까지는 전액을 공제하고, 기업상속재산가액의 40% 범위 내에서 한도를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60억원, 80억원, 10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2009년도부터는 한도액이 확대되어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한도가 타당한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승계 측면에서 보면 상속세의 부담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독일의 경우 기업승계요건을 충족할 때 우선 공제를 받는 금액이 225,000유로로서 우리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공제 후 과세부분에 대해서 35%의 추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규모 사업용 택지에 대하여

80%의 감면을 제공하여 일반 상속세 과세가격의 20%로 평가하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사업용 자산의 75%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공제금액은 부족한 감이 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기업을 영위한 기간 중 8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2008년 세법개정에서 사업영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을 영위한 기간 중 8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너무 형식적이고 경직된 요건이다. 대표이사는 여러 사유로 쉽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2.2. 개선방안

가업재산의 경우에는 이미 소득 획득과정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재산인데, 이러한 재산 전체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면 소득과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권의 승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상향조정하고, 가업상속재산의 50% 정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의 한도액을 인상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도액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공제제도는 실질적으로 소득과세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에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되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요건을 보면 기업을 영위한 기간 중 8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형식적이고 경직된 요건이다. 피상속인이 꼭 대표이사 직함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융통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3.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제도

3.3.1.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대상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은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⁶⁾

이와 같은 경영권 할증평가 제도는 똑같은 금액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경영권이 있는 주식은 그렇지 않은 주식보다 실제가치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때 도입되었다. 즉, 최대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할증과세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권 프리미엄의 일률적 적용은 문제가 있으며,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기업 등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소기업은 상속세액이 30억을 초과한 상태에서 경영권을 승계할 경우에 납부세율이 10~15% 할증됨에 따라 세율은 최고 65%까지 적용받게 된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의 경우 대부분이 최대주주의 경우가 많으며, 창업주가 중심이 된 가족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고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3.3.2. 개선방안

근거도 불충분하고 정확한 평가도 어려운 경영권 프리미엄의 개념을 토대로 할증 과세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저해하는 상속세 할증과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국과 달리 일본과 독일은 아예 할증제도가 없으며 미국의 경우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만 적용하고 있고, 그 할증률은 법령이나 통첩에 의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유사기업 경영권 매매사례를 감안하여 국세청에서 할증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경영권이나 가업 상속을 다른 재산의 상속보다 우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기업자산의 75%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영국은 사업체와 사업체 관련 지분 및 비상장회사 지분의 경우 100%를 상속가액에서 감액(상장회사는 50%를 감액)하고, 독일은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35%를 경감하고 있다.

6)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을 2009. 12. 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101조).

3.4. 연부연납제도

3.4.1. 문제점

가업승계시 상속세의 일시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납세담보를 제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이월해주는 제도이다.

연부연납 허용기간은 일반재산 상속세 5년, 가업상속재산 상속세 7년(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이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15년(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하고 있다. 일시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동안 가산율⁷⁾을 1일 9.3/100,000 (연 3.4%)로 부과하고 있으며,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연 10~10.95%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분할 납부기간이 외국에 비해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재산이 사업용 자산으로 묶여 있어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상속세의 부담 때문에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고 수익도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3.4.2. 개선방안

현행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연부연납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⁸⁾

또한 현행 규정과 같이 가업상속재산의 비중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방법보다는 기업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연부연납기간을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분납의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7) 가산율이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8) 일본의 경우 20년간 상속세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3.5. 가업승계 성과에 따른 상속세 감면제도 도입

독일의 경우처럼 기업이 가업승계 후 상속받은 기업을 계속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매년 일정률(10%)씩 감면하고 10년 후에는 완전 면제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기업의 연속성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를 10년간 유예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년 10%씩 감면하여 10년 후에는 완전 면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문제를 기업경쟁력 강화 및 고용안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중소기업이 적합한 승계자 부재 등 사유로 인하여 사업 중단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가업승계 문제를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독일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가족 구성원에 의한 가업승계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이는 가족기업의 기업철학과 운영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족기업은 일반적으로 수익을 우선적으로 재투자하며 기존의 일자리 유지 또는 확충에 자금을 동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승계 과도기의 어려운 시기에 해당기업의 재정기반이 약화될 소지가 발생하므로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업승계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상속세제 개혁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같은 상속세의 점진적 감면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경영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가업승계 시점에서 상속세를 결정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납부를 유예하고, 가업승계 이후 매년 경영성과(성장률, 고용유지, 투자 등)를 평가하여 매년 일정비율씩 세금을 감면하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원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승계 이후의 활동조건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성과를 평가하는 방법 및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가업승계 성공기업에 대한 사례를 전파한다면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닌 경영 노하

9) 조병선·조봉현,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책과제, 2007, p.255.

우와 축적된 기술의 대물림이라는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따른 우리나라 상속과세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가업승계와 관련된 우리나라 상속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상속세의 세율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부담은 저축의 형성을 어렵게 하여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속세 세율은 최소한 소득세 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2009년부터 가업상속공제액이 확대되어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한도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측면에서 보면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한도액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중소기업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최대주주인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대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할증과세를 하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경영권이나 가업상속을 다른 재산 상속보다 오히려 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하는 주식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분할 납부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아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자산이 사업용 자산으로 묶여 있어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상속세의 부담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수익도 악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연부연납기간을 현행보다 충분히 연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독일의 경우처럼 가업승계 성과에 따른 상속세 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이 완화되어야 기업경영인에 의한 불법·편법 상속의 관행이 없어지고,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투자가 집행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 및 부의 창출이 가능하여 이익금이 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의 비교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세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계개선방안이 조세형평 등 조세정책 및 국민의 의사와 합치되는 지는 불명확하다. 향후 이를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영자의 세대교체 경험이 많은 일본과 독일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창업에 준하는 중요한 중소기업육성시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존기업의 폐업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이루어져 고용 창출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은 가업 승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기업의 지속 성장, 경제 안정성 제고, 고용 안정 등 긍정적 시각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과중한 현실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기획재정부, '2008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2008.9.1.
- , '2008년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 문답자료' 보도자료, 2008.1.15.
- 대한상공회의소, 2007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 2007.8.
- 배원기, 「가업승계의 기술」, 매일경제신문사(매경출판주식회사), 2008.
- 안중범, '기업관련 상속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상공회의소, 2006.
- 이성봉, '기업 상속 관련 세제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 한독경상학회, 2008년 9월.
- 이용재,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연구',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2008.
- 한국조세연구원, 「2008년 12월 주요국의 조세동향(2)」, 2008.
- 송헌수,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와 경영권 상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신상철,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7.
- 정지선,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조병선·조봉현,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책과제', 중소기업연구, 2007.
- 채현석,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최명근, '상속과세 유형전환 및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2.
- 최명근·조경엽,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2006.
- 최봉길, '중소기업사업승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2007.
- 최승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공법연구, 2008.
- 황인학, '기업의 경영권 및 가업승계 부담완화 방안', 월간조세, 2008년 3월.

